

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2년 4월 3일
- 회부일자 : 2002년 4월 4일

3. 제안이유

-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보조사업 신청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보조사업 신청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간소화
 - “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,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”과
 - “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”의 제출규정을 삭제함.

※ 서울, 대전, 전남, 경북은 폐지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규제사항을 완화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,

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려는 것으로서,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동 조례 제5조 제2항 제6호의

『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자의 성명,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』을 삭제하여도,

동 조례 제6조 제4호 규정에 의한

『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』의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